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2호-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이일하 | 발행처: 굿네이버스 | 발행월: 2015년 11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Children's Play Rights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놀 권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Key message | 아동의 놀 권리 존중받아야

놀 권리는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권리이다. 아동기는 놀이가 주는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누리는 고유한 시기이지만 아동의 놀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생활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 가중된 학업부담으로 인해 놀 시간과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놀이의 유료화와 구조화로 인해 놀이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학업부담으로 인해 자유롭게 놀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놀이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 지역, 계층, 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공 놀이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 ▷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및 주변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 틀에 맞추어진 놀이프로그램보다 자율적으로 놀이를 주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동에게 주어져야 한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에 따라 놀이 환경조성을 위한 아동의 의견이 조사되어야 하며, 정책실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Situation | 아동의 놀 권리 현황



■ 아동의 놀 권리 실태

- 아동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권리
-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권리(39.5%)'
(국가인권위원회, 2010)
- 아이들은 마음껏 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 '학원 가느라 시간이 없어서'(41.3%) (경향신문, 2014)
- 한국아동의 일주일 공부시간
- OECD 국가의 아동보다 15시간 많은 49.43시간 (OECD 최장)
(김기현 외, 2009)
- 놀이와 여가공간 및 시설
- 절반이상(51%)의 아동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²⁾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4)

한국아동 놀이의 변화

아동의 놀이환경은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50~60년대에는 논밭에서 또래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고 1970~80년대에는 골목길에서 여럿이서 술래잡기를 하며 노는 아이들이 많았다. 80년대 이전 아이들은 집 주변의 산과 들과 같은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었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도로와 건물이 늘어나게 되고 아이들의 놀이장소가 집, 노래방, PC방과 같은 실내공간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동의 놀이공간이 자연에서 실내로 변화되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놀이시간

오늘날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교육열로 인해 아동을 사교육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어 놀이시간이 줄어들고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국아동의 일주일 공부시간은 OECD평균(33.92시간)에 비해 15시간 많은 49.43시간으로 은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 아이들의 공부시간이 해외 아동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현 외, 2009). 또한 2014년 <경향신문>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또한 학업부담으로 인해 놀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아이들은 마음껏 놀지 못하는 이유로 '학원 가느라 시간이 없어서'(41.3%)를 가장 많이 꼽아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인해 놀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부족한 놀이공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보고서(2013)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교사 모두 주변환경에서 아동이 놀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연구(2014)에서는 아동에게 접근처 놀이와 여가공간 및 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절반이상(51%)의 아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아이들 또한 놀이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4) 아이들의 놀이와 여가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15.01.27.)으로 인해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국 1,500여개의 놀이터가 올해 초 폐쇄됨에 따라 남아있던 아동의 놀이공간마저 사라지고 있다.

1) 본 내용은 <김성원, 권미량. 2015. 포스터 발표 : 한국 유아기 놀이의 세대별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5(0): 543-543>에 근거하여 작성됨.

2) 초, 중, 고 아동 563명을 대상으로 놀이와 여가 공간 및 시설의 충분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충분하지 않다' 20.7%, '약간 충분하지 않다' 29.4%는 반응을 보임.

3) 조사결과 학교 끝난 뒤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을 3개 이상 다닌다는 학생이 42.1%, 2개를 다닌다는 학생이 29.8%였음.

놀이에도 차별받는 아이들

최근 놀이가 유료화와 상업화됨에 따라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아동이 놀이를 위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인 카페(키즈카페), PC방, 노래방, 영화관, 오락실, 놀이공원 등에서는 대부분 이용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여 아동이 마음껏 놀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 여부에 따라 놀이의 질과 선택범위가 달라지면서, 이로 인해 놀이의 접근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윤소영, 2009). 뿐만 아니라 도시의 아이들 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접근처 놀이공간이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의 놀이시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4).

일상생활의 놀이에서 구조화된 놀이로

놀이에 있어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주어진 놀이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놀이의 증가로 인해 아동이 주도하여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방법에 있어 아이가 스스로 놀이 활동과 놀이공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은 사라지고 축구교실, 요리교실, 독서교실 등과 같이 체육활동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과 구조화된 놀이 활동(structured play)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놀지 못하는 아이, 행복하지 않은 아이

아동에게 놀이와 행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직 아동의 행복감과 놀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연구한 자료는 없지만 아동에게 놀이와 놀이공간의 제공은 아동이 더 나은 삶의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The Children's society, 2006).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결과(염유식 외, 2014)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74점으로 OECD국가 중 6년 연속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아이들의 열악한 놀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Children's rights issue | 아동권리 이슈

놀 권리는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권리로서 아동의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놀이와 보호권

놀이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하게 되어 운동기능이 발달되고 에너지를 방출하여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다양하고 즐거운 신체적 활동은 아동의 면역력을 길리주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리고 놀이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아동에게 감정과 관련 있는 뇌부분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조절 능력을 발달할 수 있도록 돋는다. 놀이를 통해 아동은 기본적인 감정(화, 두려움, 슬픔, 기쁨)을 느끼게 되고, 놀이를 반복하면서 아동은 이러한 감정들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Sutton-Smith, 2003). 특히 빈곤층의 아동에게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건강과 심리사회적 보호요소로써 작용하며(Attrie, 2004), 놀이를 통해 아동은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하고 즐거운 아동기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놀이와 발달권

놀이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뛰어 놀아 신체활동을 하고, 또래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대인관계를 맺어간다. 또한 아동은 놀이 활동 중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반복하면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어(Lester&Russell, 2008),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적응력, 모험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돋는다. 친구들과 함께 잘 노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에 비해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신체적 발달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Fantuzzo 외, 2004; Gmitrova &Gmitrov, 2004)들을 보았을 때, 놀이가 전반적인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놀이와 참여권

놀이는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참여활동의 시작이다.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화해 간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아동과 어른과의 교류를 늘려갈 수 있어 지역 내의 어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지역 내 참여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Woodhead&Brooler, 2008). 자신이 주변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동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만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동은 지역사회 내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르면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아동에게 놀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 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서는 사교육이 아동의 여가와 문화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 나아가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여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은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선포하였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어린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남겨놓은 것이다. 어린이 현장 5조에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국내의 법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단일법은 없지만 아동을 위한 여가시설 설치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⁴⁾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제놀이협회(IPA) 놀 권리 선언문 (IPA Declaration of the Child's Right to Play)

1977년 얄타회의에서 제정된 국제놀이협회의 놀 권리 선언문은 놀이가 영양, 건강, 주거, 교육의 기본적 필요와 더불어 모든 아동의 잠재적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한다.
 “아동은 세계의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된다. 놀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놀이는 삶이다. 놀이는 본능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탐구하는 것이며 소통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놀이는 행동과 생각을 함께하도록 한다. 놀이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준다. 놀이는 모든 문화와 역사에서 이루어졌다. 놀이는 삶의 모든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놀이를 통해 아동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며 놀이는 삶을 배워가는 방법의 하나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 놀이현장’

2015년 5월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현장을 선포하였다. 어린이 놀이현장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발표되었으며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 정부, 민간단체, 시도 교육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4)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Recommendations | 제언

■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놀이는 ‘쓸데없는 것’, ‘시간낭비’라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위해 놀이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놀이는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신체적, 정신적 발달,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도 놀이는 인간으로서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서 중요하다. 특히 아동에게는 아동기를 누리고 놀이자체가 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놀이 활동은 중요하다(Play England, 2011). 아동의 놀이에 있어 가정은 놀이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대부분의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가정 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또한 부모는 아동이 처음 놀이를 시작할 때부터 아동기 전체 놀이 활동의 중요한 조력자이므로 부모가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놀이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 놀이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교육으로 인해 학원가기 전, 숙제하기 전 틈틈이 놀고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온전히 놀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놀이시간을 지정하여 아이들이 운동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충분한 놀이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놀이시간의 확보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동의 행동문제를 줄이고 아동의 행복증진을 도울 수 있다(Lester&Russell, 2008; David, 2012; National Children's Office, 2004). 2014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놀이 활성화’를 위해 학생 놀이동아리 운영 및 하루 100분 이상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추진(서울시 교육청, 2014) 하여 놀이 활동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의 실천을 장려하는 활동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보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놀이시간 증대를 위해서는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고 놀이의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교육제도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역, 계층, 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놀 수 있는 공공(공동) 놀이공간이 확충 되어야한다.

개인보다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놀이 활동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아동의 놀이 활동을 늘리기 위해 부모만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놀이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내의 공공놀이시설은 아동에게 다양한 계층의 아동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인종의 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Lester&Russell, 2008). 그러므로 공공놀이 시설 확충을 통해 모든 아동의 놀이에 활용될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계층,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공평한 놀이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53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료화된 놀이시설로 인해 빈곤계층의 아동에게는 놀이의 기회가 더욱 제한되어 놀이기회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공 놀이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및 주변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안전은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이슘이다. 놀이시설로 인한 심각한 부상, 교통사고와 유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의 증가로 인해 아동의 야외 놀이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동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New Policy Institute, 2002). 이러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위해 ‘Home Zone’을 지정하여 자동차는 16km 이내로 주행하도록 하고, 놀이공간과 앉을자리 확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히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National Children's Office, 2004). 그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의 70%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놀이 활동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icholson & Vincenten, 2000). 이처럼 안전한 놀이공간의 확보는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아동이 자유롭게 바깥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에도 해외사례와 같이 자동차가 없는 길, 아동놀이시설 주변 속도 제한과 같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 시행을 통해 아동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 놀이에 있어 아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틀에 짜여진 구조화된 놀이 활동 보다는 아동이 주도적으로 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아동 교육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한 아동 놀이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 조사된 ‘아동의 놀이와 놀이전문가에 대한 견해’ 연구에서, 아동은 놀이에 있어 모든 아동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자율권과 선택권이 본인들에게 주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Manwaring, 2006). 아동이 진정 원하는 놀이는 구조화된 놀이보다는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노는 것이다. 자유로운 놀이 활동을 통해 놀이가 주는 본질적인 자율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놀이 활동에 있어서 어른이 결정하기 보다는 아동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놀이 환경조성을 위한 아동의 의견이 조사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 실행 시 반영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아동의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아동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놀이공간 조성과 놀이시설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조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놀이시설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를 높이고, 놀이시설의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다(National Children's Office, 2004). 최근 발표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05.12. 발표)에 따르면, 올해에는 아동기 학습-놀이간 균형을 추구하고, 아동의 놀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는 ‘놀 권리 헌장’을 제정하고, 2016년도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교육청이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수행할 수 있는 놀이정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동의 놀 권리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반가운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동이 원하고 필요시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아동의 의견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

- Attrie, P. (2004). 'Growing up in disadvantage: a systematic review of the qualitative evidenc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0(6): 679–689.
- David W. (2012), The importance of play, Toy Industries of Europe.
- Fantuzzo, J, Sekino, Y and Cohen, H (2004), 'An examination of the contributions of interactive peer play to salient classroom competencies for urban head start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41(3): 323-336.
- Gmitrova, V. and Gmitrov, J. (2004), 'The primacy of child-directed pretend play on cognitive competence in a mixed-age environment: possible interpretation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4(3): 267–279.
- Lester S. & Russell W. (2008), Play For Change, National Children's Bureau; UK.
- Manwaring, B. (2006), *Children's Views 2006: Children and young people's views on play and playworkers*. London: SkillsActive.
- National Children's Office (2004), Ready, Steady, Play! A national Play Policy; Ireland.
- Nicholson, A. and Vincenten, J. (2000), Creating a Safer Europe for Our Children. *Irish Medical Journal*, 95 (10).
- Peter G, (2011), The decline of play and the rise of psychopatholog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Play England (2011), A word without play: An expert view, Play England.
- Sutton-Smith B. (2003), 'Play as a parody of emotional vulnerability', in JL Roopnarine (ed) *Play and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Plat and culture studies 5.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 The Children's Society (2006), *The Good Childhood: A national inquiry launch report*.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 Woodhead M. & Brooker L. (2008), *Early Childhood Matters*, Bernard van Leer Foundation.
- 김기현,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 최동선 (2009), 아동·청소년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송현숙 (2014), 초등 2년생 23% “방과후 1시간도 못 놀아”, 경향신문, 2월 26일.
- 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2014),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 윤소영 (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4), 한국 아동의 놀 권리 현주소와 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